

# 2024년 JDC 도민지원사업 공개모집 공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한 도민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4년 JDC 도민지원사업」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03. 2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1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지역사회 구성원의 직접제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자의 자발적·전문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 선정 이후 ~ '24.12.31.
- (신청자격) 비영리기관(법인·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공익단체 등)  
\* 의무적 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필수
- (공모주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민지원사업으로 제주가치증진, 지역상생, 사회복지 분야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구분	예시
제주가치증진	■ 4.3 등 제주역사 보존 ■ 해녀 문화 보존 ■ 곳자왈 보존
지역상생	■ 도민 소득 향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가치 함양 ■ 지역 현안 해결 ■ 마을 지원
사회복지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취약계층 복지·인권 증진
문화진흥	■ 전통문화 계승발전 ■ 예술인 지원 ■ 문화콘텐츠 개발
환경보전	■ 기후변화·환경대응 ■ 자원순환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 지하수 보존
인재양성	■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청년 취업 지원
기타	■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 출산 장려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외 공모 주제와 부합하는 사업 제안 가능

※ 지원(신청)제외 사업은 [붙임] 참고

※ 'JDC 복지시설 차량지원' 및 'JDC Re(里)-START'(지역특화 마을 조성 지원 사업은 별도 공모 예정

- (지원내용) 1개 사업비 최소 5백만 원~최대 1억 원 지원
  -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신청자와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선정절차)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



## 2 신청 및 평가

###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식) 전자우편(gongmo@jdcenter.com)을 통해서만 가능
  - \*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JDC 공모사업 담당자가 접수 다음 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며, 평일 기준으로 익일 중 회신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접수 확인 연락 필요
  -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우편 발송이 불가할 경우 사전 담당자 문의 후 우편접수 가능(단,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24.3.26~‘24.4.22
  - \* 모든 제출서류가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달해야 하며, 마감일 18:00 이후 도달 분은 신청 자격 미달로 심사 제외 처리
- (제출서류)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유형	내용	비고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참여준수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증명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 \* 접수 이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JDC 상생협력팀(☎064-797-5400)
  - \* 문의는 평일 기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내 가능

##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로 평가

구분	내 용
(1차) 서류심사	· 지원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평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적절성 여부 평가
현장점검	· 사실관계 및 적격성 확인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사진 등 관련 자료 확인
(2차) 대면심사	· PT 내용 및 현장점검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
최종협의	· 사업비 등 세부사항 최종 조율

- \* 단, 1천만 원 이하 지원 사업인 경우 현장점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한 평가로 대면평가 대체 가능

-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총 10개 항목에 대해 8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대 점수는 8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56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대면심사 진행함

- 각 평가항목별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함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80%	60%	40%	20%

- 가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량으로 평가함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비율	20% 이상	16% 이상~ 20% 미만	10% 초과~ 15% 미만
	배점	5	3	1
프로젝트 인근마을* 여부	구분	JDC 추진 프로젝트 내 마을		
	배점	2		

- \* 프로젝트 마을이란 「제주특별법」 제159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행정구역(동·리 등)내에 한하며, 최소신청단위는 마을회 이상으로 함. 단, 기타 자생 단체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서류심사 심사 기준 및 배점>**

분야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단체 역량 (20)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 구성이 적정한가?	10	
	전문성 및 책임성	· 신청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가? · 신청사업이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가?	10	
사업 내용 (50)	추진부합성 및 효과성	·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JDC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가? ·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20	
	공공성	·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현안해결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10	
	타당성 및 창의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이 적절한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방법이 창의적인가?	10	
	적합성 (사업분야 별로 평가)	제주가치 증진	제주만이 보유한 고유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인가?	10
		지역상생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 기여를 위한 적절한 사업인가?	
		사회복지	지역 내 복지수준 증진 기여를 위한 적절한 사업인가?	
		문화진흥	지역 문화보존·증진·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인가?	
		환경보전	환경 보존 및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가?	
인재양성		국제화를 위한 도민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인가?		
기타	기타 JDC가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민 지원사업인가?			
예산 (10)	예산의 타당성	·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계획이 잘 연계되어 있으며, 각 항목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0	
<b>계</b>			<b>80</b>	
가점 (7)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사업신청자 부담금액/총사업비)이 20% 이상인 경우		5	
	· 사업신청자가 JDC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내 마을인 경우		2	

- (현장점검) 공모 주관부서 중심으로 소재지 및 예산, 직원현황 등 현장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기반의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대면심사) PT 발표 형식의 사업계획 설명 및 현장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및 적격성 평가

**<대면심사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역량·의지가 충분한가?	10
· 사업 관리·협력체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10

\* 배점비율은 서류심사와 동일함

- (최종선정) 서류 및 대면심사 총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최종 사업후보로 선정하며, 필요 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세부사항 조정을 통한 최종사업 선정

### 3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진행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진행

- (지원금 교부) 관련절차 이행 후 1~2회에 걸쳐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행보증증권 제출 必)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요시 지원규모 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관련 제출 서류>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DC 도민지원사업 협약서(JDC-수행단체간), 지원금 교부신청서</li> <li>·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용 통장사본 등</li> <li>·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li> </ul>	

- (사업진행) 사업계획에 의거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
  - 사업내용 및 예산배분 변경 사유 발생 시 JDC의 승인 필요
- (중간점검) 2천만원 초과 사업에 한해 중간점검 실시 후 2차 지원금 교부
  -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예산집행 정당성 점검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파악, 향후계획 점검 등

#### ③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 사업종료후 회계법인 검증확인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정산) 집행잔액, 이자 및 수수료, 부당집행 환수금 반납

1.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사용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법인·단체가 신청한 사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위반행위\*가 적발된 법인·단체가 신청한 사업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
5. 현재 JDC로부터 기부금 또는 광고성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6.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협력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
2.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4.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취지와 성격에 부적합한 사업
5. 동문회·종친회·동호회·클럽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적 모임 성격에 부합하는 행사
6.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총회, 임원의 취임식 등 단순 내부 행사의 경우

7. 선심성 지원, 영리성 행사 지원, 해외시찰 및 자산성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 등
8.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로 공모사업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